

창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493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나4933 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1. 7 선고 2019가소68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우, 이승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정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1. 7. 선고 2019가소6864 판결

변론종결 2020. 9. 18.

판결선고 2020. 10.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8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훼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6. 3. 19.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9. 2. 12.부터 2001. 11. 6.까지 총 1,015,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준비금으로 2012. 3. 8.1) 까지 5,618,648원을 적립하였고, 이후 2019. 1. 30.까지 총 6,171,973원을 적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 3. 27.부터 수차례 대출을 받아오다가, 2012. 1. 3. 창원지방법원 2012개회233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 한다)은 2012. 3. 8.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3. 4. 19. 변제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내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역시 위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았고, 회생법원은 2017. 5. 8.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면책결정은 2017. 5. 23.

확정되었다(이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년 조합원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2018년경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9. 2. 20. 원고에게, '원고는 조합원 당연탈퇴사유에 해당되어 조합에서 탈퇴 처리되었으며, 탈퇴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출자지분환급금 중 출자금 1,015,000원 및 사업준비금 6,171,000원 합계 7,186,000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61,217,000원으로 상계되었다.'는 내용의 상계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상계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이 사건 상계예고통지서는 2019. 2. 22.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가입한 이후 피고에게 총 1,015,000원의 출자금을 납입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준비금으로 총 6,171,973원을 적립한 사실, 원고는 2018년경부터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018년 피고 조합원 자격인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당연히 탈퇴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출자지분환급금으로 출자금 1,015,000원 및 사업준비금 6,171,973원 합계 7,186,97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7,186,000원(이하 '이 사건 출자지분환급금 채권'이라 한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상계예고통지서를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7조, 제417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출자지분환급금 채권 중 회생법원의 면책결정 확정 전으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2012. 3. 8.) 전까지 납입된 출자금 1,015,000원 및 적립된 사업준비금 5,618,648원 합계 6,633,648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출자지분환급금 채권 중 위 6,633,648원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에는 회생채권자가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면책된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으며(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6조), 개인회생채권자의 채무가 기한부나 조건부인 때 또는 장래의 청구권에 관한 것인 때에도 상계할 수 있는 점(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7조), 면책의 효력을 받는 채권은 면책허가에 의하여 자연채권으로 될 뿐 채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채권과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모두 존재하였고, 양 채권이 서로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개인회생채권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라고 하더라도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개인채무자의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한편 조합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지분권은 일종의 사원권으로, 조합원이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는 때 그 조합원의 출자지분권은 금전청구권인 출자지분환급청구권으로 변환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출자지분권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된 2018년경 비로소 출자지분환급청구권으로 변환되었고,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그 다음 회계연도인 2019년부터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환급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면책결정 확정(2017. 5. 23.) 전까지 원고의 출자지분권은 이 사건 출자지분환급금 채권으로 변환되었다거나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임의로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 조합원의 조합 탈퇴를 주장할 수도 없다. 결국 수동채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출자지분환급금채권은 회생법원의 면책결정 확정 전까지는 구체적인 권리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자동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양 채권이 면책결정 확정 전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상익 판사 강진명 판사 이병호

1)아래 나항에 기재한 회생법원의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창원지방법원 2012개회233호).

2)조합원의 조합 탈퇴는 농업협동조합법상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부관으로서의 정지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출자지분환급금 채권을 조합원의 탈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더라도, 상계자는 본래 수동채권의 조건 불성취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채무자회생법 제587조, 제417조), 조합원의 탈퇴는 그 성질상 법정 탈퇴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어서, 조합인 피고가 임의로 조합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도록 조건 불성취의 이익을 포기하고 그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면책결정확정 전에 상계적상이 생길 수는 없었다.